



의안번호	제 2015 - 29 호
보 고 연 월 일	2015. 10. 23. (제68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94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제95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2
III. 논의 결과	2
1.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안	2
2.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안	6
3.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안	16
IV. 향후 일정	23

별첨	황병헌,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 II”
	김현아, “근로기준법 등 양형기준 검토 II”
	황병헌,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 II”
	김세종,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II”
	김현아, 오기찬, “과실치사상, 석유사업법위반 범죄군 형량범위 검토

I. 제94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5. 10. 12.(월)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김세중,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황병헌 전문위원

3. 주요 안건

- 석유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형량범위) 검토

II. 제95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5. 10. 19.(월) 16:00 ~ 18:20
- 장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2. 참석자(8명)

- 수석전문위원, 김현아, 김세중, 김혜경, 노수환, 범현, 오기찬,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석유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Ⅲ. 논의 결과¹⁾

1.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안

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1)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5년 ↓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3	대규모(50만 리터 이상)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2) 검토

-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수량(리터)		선고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48	60		
5만 미만	수	5	65	3	197	0	100	0	66	30	1	0	0	8	0	0	0	0	0	475	7.26
	비율	1.1	13.7	0.6	41.5	0.0	21.1	0.0	13.9	6.3	0.2	0.0	0.0	1.7	0.0	0.0	0.0	0.0	0.0	100.0	
5만 이상, 50만 미만	수	0	12	0	68	1	54	1	53	62	8	1	3	17	3	0	1	1	0	285	9.88
	비율	0.0	4.2	0.0	23.9	0.4	18.9	0.4	18.6	21.8	2.8	0.4	1.1	6.0	1.1	0.0	0.4	0.4	0.0	100.0	
50만 이상	수	0	4	0	22	0	40	0	46	47	1	0	1	8	15	2	3	0	1	190	11.86
	비율	0.0	2.1	0.0	11.5	0.0	21.0	0.0	24.2	24.7	0.5	0.0	0.5	4.2	7.9	1.0	1.5	0.0	0.5	100.0	
전체	수	5	81	3	287	1	194	1	165	139	10	1	4	33	18	2	4	1	1	950	8.97
	비율	0.5	8.5	0.3	30.2	0.1	20.4	0.1	17.4	14.6	1.1	0.1	0.4	3.5	1.9	0.2	0.4	0.1	0.1	100.0	

1) 제94차 및 제95차 전체회의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여 보고함

○ **중소규모와 일반규모의 금액기준 ⇒ 5만 리터로 정함**

- 판매량에 따른 형량분포 검토 결과, 5만 리터를 기점으로 평균형량에 차이 나타남

판매량	- 1만	1만 - 3만	3만 - 5만	5만 - 10만
평균형량	6.98월	7.63월	7.64월	9.25월

(가) 제1유형 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 : 4월 - 10월**

- 평균형량 징역 7.26월, 징역 6월이 41.5%로 가장 많은 분포
- 징역 4월이 13.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제2유형과의 권고 형량범위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하한을 4월로 설정
- 기본영역에 90.7% 포섭

○ **감경영역 : - 6월**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를 고려

○ **가중영역 : 8월 - 1년6월**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 1년6월을 초과하여 선고된 사례가 없는 점 및 제2유형 기본영역과의 균형을 고려

(나) 제2유형 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 : 8월 - 1년6월**

- 평균형량 징역 9.88월, 징역 6월이 23.9%, 징역 1년이 21.8%로 그 다음을 차지
- 형량분포가 징역 8월, 10월, 1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제1, 3유형과의 권고 형량범위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하한을 8월로 설정
- 기본영역에 69.8% 포섭

○ **감경영역 : 4월 - 10월**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를 고려

○ **가중영역 : 1년 - 3년**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 및 제3유형 기본영역과의 균형을 고려

(다) 제3유형 대규모(50만 리터 이상)

○ **기본영역 : 1년 - 3년**

- 평균형량 징역 11.86월, 징역 1년이 24.7%, 징역 10월이 24.2%로 그 다음을 차지
- 비중이 가장 큰 징역 1년을 기본영역의 하한으로 설정하고, 징역 10월은 감정영역으로 포섭
- 대규모 유형은 가벌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평균형량 11.86월이 기본영역에 포섭되지 않도록 규범적으로 권고 형량범위 상향조정
- 기본영역에 40.3% 포섭

○ **감정영역 : 8월 - 1년6월**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를 고려

○ **가중영역 : 2년 - 4년**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 및 법정형 상한이 5년인 점을 고려

나.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1)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2년↓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형량분포**

단위: 명, %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8	24		
§39①8호	수	0	0	3	0	21	7	7	6	1	0	45	7.87
	비율	0	0	6.7	0	46.7	15.6	15.6	13.3	2.2	0	100	

○ 기본영역 : 4월 - 10월

- 평균형량 징역 7.87월, 징역 6월이 46.7%로 가장 많은 분포
- 평균형량(징역 7.26월)이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의 제1유형 중소기업의 기본영역이 4월 - 10월인 점, 평균형량이 더 높은 '정량미달판매·부피증가 판매'와의 권고 형량범위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하한을 4월로 설정
- 기본영역에 84.6% 포섭

○ 감경영역 : - 6월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를 고려

○ 가중영역 : 8월 - 1년6월

- 법정형 상한이 2년인 점과 실제 징역 1년6월을 초과하여 선고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은 1년6월로 설정

(2) 정량미달판매·부피증가 판매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2	정량미달판매 · 부피증가 판매	2년 ↓	- 8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8	24		
§39①2호	수	0	0	0	0	0	2	1	1	0	0	4	9.50
	비율	0	0	0	0	0	50.0	25.0	25.0	0	0	100	

○ 기본영역 : 6월 - 1년

- 분석대상 판결이 4건뿐이지만, 가장 낮게 선고된 형이 징역 8월이고, 평균형량도 징역 9.50월에 이르는 등 법정형에 비하여 다소 높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음
- 평균형량이 낮은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와의 권고 형량범위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하한을 6월로 설정

○ 감경영역 : - 8월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를 고려

○ 가중영역 : 10월 - 1년6월

-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와의 권고 형량범위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하한을 10월로 설정
- 법정형 상한이 2년인 점과 실제 징역 1년을 초과하여 선고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은 1년6월로 설정

다. 소결 -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5년 ↓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3	대규모(50만 리터 이상)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2년 ↓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정량미달판매 · 부피증가 판매		- 8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2.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안

(1)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5년↓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 형량분포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8	24		
업무상과실치상	수	0	1	39	2	132	62	0	27	15	1	2	1	282	7.02
	비율	0.0	0.4	13.8	0.7	46.8	22.0	0.0	9.6	5.3	0.4	0.7	0.4	100.0	
중과실치상	수	0	0	0	0	2	4	0	2	3	0	0	0	11	9.09
	비율	0.0	0.0	0.0	0.0	18.2	36.4	0.0	18.2	27.3	0.0	0.0	0.0	100.0	
전체	수	0	1	39	2	134	66	0	29	18	1	2	1	293	7.10
	비율	0.0	0.3	13.3	0.7	45.7	22.5	0.0	9.9	6.1	0.3	0.7	0.3	100.0	

○ 기본영역 : 4월 - 10월

- 평균형량 금고 7.10월, 금고 6월이 45.7%, 금고 8월이 22.5%로 그 다음을 차지
- 법정형(5년 이하)이 동일하고 평균형량(6.65월) 및 형량분포도 유사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권고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
- 기본영역에 92.2% 포섭

○ 감경영역 : - 6월

○ 가중영역 : 8월 - 2년

-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설정 당시 실제 선고된 최고형이 1년2월

2건이었으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경우 그보다 높은 1년6월, 2년이 선고된 사건이 함께 3건이 있고, 평균형량도 다소 높은 점을 반영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을 2년으로 설정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5년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형량분포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8	24		
업무상과실치사	수	0	5	18	1	89	81	2	51	57	1	6	2	313	8.49
	비율	0.0	1.6	5.8	0.3	28.4	25.9	0.6	16.3	18.2	0.3	1.9	0.6	100.0	
중과실치사	수	0	0	0	0	1	1	0	1	5	0	0	0	8	10.50
	비율	0.0	0.0	0.0	0.0	12.5	12.5	0.0	12.5	62.5	0.0	0.0	0.0	100.0	
전체	수	0	5	18	1	90	82	2	52	62	1	6	2	321	8.54
	비율	0.0	1.6	5.6	0.3	28.0	25.5	0.6	16.2	19.3	0.3	1.9	0.6	100.0	

○ 기본영역 : 8월 - 1년6월

- 평균형량 금고 8.54월, 금고 6월이 28.0%, 금고 8월이 25.5%로 그 다음을 차지
- 법정형(5년 이하)이 동일하고 평균형량(9.51월) 및 형량분포도 유사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의 권고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
- 기본영역에 63.9% 포섭

○ 감경영역 : 4월 - 10월

○ 가중영역 : 1년 - 3년

(3) 과실치사

○ 형량분포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8	24		
과실치사	수	0	0	1	0	14	3	0	3	6	0	0	0	27	7.93
	비율	0.0	0.0	3.7	0.0	51.9	11.1	0.0	11.1	22.2	0.0	0.0	0.0	100.0	

○ 평균형량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8.54월 > 과실치사 7.93월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7.10월

○ 금고 6월이 51.9%, 금고 1년이 22.2%, 금고 8월과 10월이 각 11.1% 차지

(가) 다수의견 : 이재권, 황병헌, 김세종, 범현, 노수환, 김혜경(6인)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2년 ↓	- 8월	6월 - 1년	<u>8월</u> - 1년6월

○ 기본영역 : 6월 - 1년

- 51.9%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는 금고 6월을 기본영역에 포함
- 평균형량 차이 반영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과 치사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정
- 기본영역에 96.3% 포섭

○ 감경영역 : - 8월

○ 가중영역 : 8월 - 1년6월

- 법정형의 상한이 금고 2년으로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의 법정형 상한 5년보다 낮으므로, 가중영역에서는 법정형 상한의 차이를 존중하여 가중영역 하한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과 동일하게 8월로 설정

- 과실치사의 경우 매우 다양한 유형의 과실범죄들을 포섭하게 되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보다 탄력적으로 설정

(나) 소수의견 : 김현아, 오기찬(2인)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2년 ↓	- 8월	6월 - 1년	<u>10월</u> - 1년6월

- 다수의견과 동일하게 설정하되, 가중영역의 하한을 10월로 높이는 방안
- 평균형량의 차이를 반영하여 그 하한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8월)보다는 높게,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1년)보다는 낮게 설정

※ 형량범위의 중첩 문제

- 현행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간 중첩의 형태는 3가지임
 - ①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 ② 점으로 중첩되는 경우, ③ 폭으로 중첩되는 경우
 - 인접한 권고 영역간에 중첩은 공통
- 양형기준 해설

■ 권고 영역과 형량범위

양형기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유형의 형량범위를 다시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이라는 3단계 권고 영역으로 나눈 다음 각 사안별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 3단계 권고 영역 중 적절한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 형량범위의 중첩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형량범위는 같은 범죄유형 내의 3단계 권고 영역 사이에서 중첩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특별양형인자의 존부 확인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범죄유형별 권고 영역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므로 양형기준의 객관성이

증대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영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각 사안별로 존재하는 특별양형인자의 중대성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양형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은 권고 영역 사이에 형량범위가 일정 부분 중첩되도록 하고 있다.

권고 영역간 형량범위의 중첩은 특별양형인자만으로 권고 영역을 결정함으로 인한 불합리, 나아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엄격한 구별이 곤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 양형인자 상호간의 영향력이 양형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한다.

▶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중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

○ 권고 영역의 기계적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감경, 가중영역 간에도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특별가중인자가 2개, 특별감경인자가 3개 있어 감경 영역에 해당하나, 특별양형인자의 질적 판단결과(특정 특별가중인자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나 일반양형인자(일반가중인자에 해당하나 당해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자인 경우)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가중영역에 포함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 또한, 양형기준은 행위인자 우월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가 동수인 경우에도 기본뿐만 아니라 감경, 가중영역에도 해당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감경영역에 해당하지만, 가중영역에 포함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이 있을 수 있음
- 양형기준 해설에서 언급한 ‘권고 영역 사이의 중첩’은 ‘인접’ 영역 사이에서의 중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이는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중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양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함

-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예측가능성은 '권고 형량범위'에 있는 것이지 '권고 영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권고 형량범위'임. 즉, 당해 사건이 '징역 ○년부터 ○년' 사이에서 선고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영역'에서 선고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 제공하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또는 상한이 2영역에 걸쳐있거나 3영역에 걸쳐있다고 하여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님
- 개별유형의 권고 형량범위의 폭이 좁은 경우 중첩을 피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도 존재함
 - 예) 법정형이 2년 이하인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이나 금액에 따라 4개 소유형으로 분류한 경우 등
- 권고 형량범위 설정은 개별유형에 대해 가장 적절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는 내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지, 점으로의 중첩을 허용할 것인지 등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이 폭으로 중첩되는 경우는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함

▶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중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

- 양형기준 취지상 세 영역에 걸친 중첩은 바람직하지 않음
 - 즉,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량범위를 감경·기본·가중으로 나누되, 양형인자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양형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권고 영역 사이의 일정 부분을 중첩한다는 것임
 - 양형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① 각 영역 사이의 중첩은 원칙이 아닌 예외로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② '권고 영역 사이에 형량범위가 일정 부분 중첩되도록 하고 있다'는 의미는 문언상 '감경영역과 기본영역 간 중첩' 또는 '기본영역과 가중영역 간 중첩'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③ 2개 영역 사이에서만 중첩

을 허용함이,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함

-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의 대부분에 대하여 중첩을 두었다거나, 형량범위의 폭이 좁은 경우(법정형이 2년 이하인 과실치사, 3년 이하인 근로기준법 중 임금) 중첩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

-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에서 세 영역에 걸친 중첩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 교통범죄의 예와 같이 형량범위의 폭이 넓은 경우에도 중첩을 둔 점에 비추어 기존 양형기준에서 중첩을 둔 이유는 형량범위의 폭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u>4년</u>	3년-5년	<u>4년</u> -6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u>5년</u>	4년-6년	<u>5년</u> -8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형량분포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8	2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	1	1	2	1	12	9	0	3	6	0	0	0	35	7.54
	비율	2.9	2.9	5.7	2.9	34.3	25.7	0.0	8.6	17.1	0.0	0.0	0.0	100.0	

- 평균형량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8.54월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7.54월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7.10월

2) ‘사이’의 사전적 의미는 ‘한곳에서 다른곳 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으로, 둘 사이의 거리나 공간을 의미하고 두 영역간 중첩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 양형기준 해설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에도 부합함(2015년 양형기준 548쪽)

감경	감경/기본	기본	기본/가중	가중
----	-------	----	-------	----

[집행유예 선고 가능 영역]

- 징역 6월이 34.3%, 징역 8월이 25.7%, 징역 10월과 12월은 8.6% 및 17.1%를 차지

(가) 다수의견 : 이재권, 황병현, 김세종, 범현, 노수환, 김혜경(6인)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7년 ↓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유형과의 관계

-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권고 형량범위를 모두 포섭할 필요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단일범으로 기소되는 경우³⁾의 평균 형량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평균형량보다 낮고, 형량분포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각 영역의 하한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반영

○ 양형자료 조사 대상사건 35건의 영역별 분포

- 교통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① 처벌불원, ②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은 특별감경인자, ③ 공탁, ④ 보험금, ⑤ 단순 피해자과실은 일반감경인자, ① 중과실은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판단

영역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형량	2	3	4	6	8	12	5	6	8	10	12	10	12
사건수	1	1	2	3	2	1	1	8	7	2	2	1	3
합계	11						20					4	

- 소수의견의 분석과 달리 대부분 기본영역에서 선고되었고, 달리 다른 유형과 평균형량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평균형량이 나타내는 양형실무의 차이를 다른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영함

3) 주로 사업주로서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경우나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과실이 아닌 경우에 단일범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 34.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는 징역 6월을 기본영역에 포함
- 평균형량 차이 반영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과 치사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정
- 기본영역에 85.7% 포섭
- 기본영역 20건 중 19건 포섭 ↔ 소수의견은 20건 중 4건 포섭

○ 감경영역 : 4월 - 10월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와 동일하게 설정
- 감경영역 11건 중 7건 포섭 ↔ 소수의견은 11건 중 8건 포섭

○ 가중영역 : 10월 - 3년6월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와 동일하게 설정하되, 평균형량의 차이를 반영하여 그 하한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8월)보다는 높게,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1년)보다는 낮게 설정
- 법정형 상한이 7년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5년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가중영역 상한을 3년6월로 설정
- 가중영역 4건 중 4건 포섭 ↔ 소수의견은 4건 중 0건 포섭

(나) 소수의견 : 김현아, 오기찬(2인)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4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7년 ↓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 양형자료 조사 대상사건 40건4)의 영역별 분포

- 대부분의 사건(총 40건 중 30건)에서 ① 합의, ② 공탁, ③ 보험금 지급, ④ 피해자 과실 또는 타인의 과실 인정 등 특별감경인자로 설정될 수 있는 양형 사유들이 1개 이상 존재
- 결국 대부분의 선고형은 감경영역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서 선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법정형 징역 7년 이하인 점, 사망의 결과 고려한 규범적 측면 반영, 양형자료 조사 대상 사건 중 대부분의 선고형은 감경영역으

4) 최초 양형자료 조사대상 사건은 40건이었으나 조사결과 해당 없는 5건 제외되었음

로 볼 수 있는 영역에서 선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고려

- 기본영역에 25.7%, 감경영역에 100%, 가중영역에 0% 포섭

가. 소결 -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2년 ↓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5년 ↓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5년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7년 ↓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3.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안

가.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강제근로·근로자폭행	3년 ↓, 5년 ↓, 7년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1) 형량분포

- ‘강제근로·근로자폭행’ 유형의 경우 단일범으로 처벌된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경합범으로 처벌된 소수의 사례에서도 주로 경합범인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에 의하여 형량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임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자료 참고 불가
- ‘중간착취’ 유형의 경우에도 양형자료 조사대상 사건이 6건에 불과 ⇒ 유의미한 통계분석자료로 보기 곤란

단위: 명, %, 월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8	24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	수	0	0	0	0	1	0	4	0	0	1	0	6	9.33	
	비율	0.0	0.0	0.0	0.0	16.7	0.0	66.7	0.0	0.0	16.7	0.0	100.0		

(2) 별도의 소유형 분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일치

- ‘강제근로·근로자폭행’과 ‘중간착취’ 사이에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자료를 통한 평균형량이나 형량분포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법정형이 대체로 징역 5년 이하로서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함

(3) 유사 범죄 양형기준 참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일반폭행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존속폭행 5년↓ 운전자폭행 5년↓ 폭행 2년↓
일반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존속협박 5년↓ 운전자협박 5년↓ 협박 3년↓
일반유기·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존속학대 5년↓ 유기 3년↓ 영아유기·학대 2년↓ 존속유기 10년↓
일반체포·감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체포감금 5년↓ 중체포감금 7년↓
일반강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강요 5년↓ 피해자에 대한 강요(청소년성 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7년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직무강요 5년↓
중한 유기·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아동복지법 아동유기·학대 5 년↓ 노인유기·학대 7년↓, 5년↓ 청소년학대 5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중유기 7년↓ 중준속유기 2년↑
업무방해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업무방해 5년↓

○ 일반강요의 권고 형량범위 주로 참조

- '강제근로'의 경우 '일반강요'와 법정형(5년↓, 7년↓) 및 강요라는 구성요건 측면에서 동일성이 존재하고 보호법익도 유사한 점을 고려함
- 중간착취의 경우 선고된 사례 중 가장 높게 선고된 형이 징역 1년6월이나 착취 금액에 따라서는 그보다 처벌의 필요성이 큰 사건도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을 2년6월로 설정

나. 임금 등 미지급

○ 형량분포

단위: 명, %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8	24		
수	7	21	314	25	434	4	135	1	52	44	8	1	1,046	6.12
비율	0.7	1.9	30.0	2.4	41.5	0.4	12.9	0.1	5.0	4.2	0.8	0.1	100	

- 소유형별 형량 분포

형량(월)			2	3	4	5	6	7	8	9	10	12	18	24	계	평균 형량
금액(만원)																
5,000 미만	수	9	9	166	7	87	0	2	0	2	0	0	0	0	282	4.61
	비율	3.2	3.2	58.8	2.4	30.8	0.0	0.7	0.0	0.7	0.0	0.0	0.0	0.0	100	
5,000~10,000	수	2	6	112	14	206	3	40	0	10	1	0	0	0	394	5.66
	비율	0.5	1.5	28.4	3.6	52.3	0.8	10.2	0.0	2.5	0.3	0.0	0.0	0.0	100	
10,000 이상	수	0	3	33	5	130	0	87	0	46	38	7	1	0	350	7.66
	비율	0.0	0.8	9.4	1.4	37.1	0.0	24.8	0.0	13.1	10.8	2.0	0.3	0.0	100	

(1) 다수의견 : 이재권, 황병현, 김세중, 범현, 김혜경(5인)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3년 ↓, 2년 ↓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가)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 - 8월

- 평균형량 징역 4.61월, 징역 4월이 58.8%로 가장 많은 분포
- 징역 4월이 5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제2유형과의 권고 형량범위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하한을 4월로 설정
- 기본영역에 92.7% 포섭

○ 감경영역 : - 6월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를 고려

○ 가중영역 : 6월 - 1년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 및 제2유형 기본영역과의 균형을 고려
- 소수의견의 경우 가중영역에 1.4%만 포섭되는 문제 있음

(나)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 평균형량 징역 5.66월, 징역 6월이 52.3%, 징역 4월이 28.4%로 그 다음을 차지
- 52.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는 징역 6월을 기본영역에 포함
- 평균형량은 5.66월에 불과하나 금액 차이에 따른 가벌성을 반영하여 다소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한을 6월로 설정
- 기본영역에 66.5% 포섭

○ 감경영역 : - 8월

○ 가중영역 : 8월 - 1년6월

(다)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 8월 - 1년6월

- 평균형량 징역 7.66월, 징역 6월이 37.1%, 징역 8월이 24.8%로
그 다음을 차지
- 평균형량은 7.66월에 불과하고, 징역 6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나, 금액 차이에 따른 가벌성을 반영하여 다소 규범적으로 상
향조정하여, 하한을 8월로 설정
- 기본영역에 50.7% 포섭
- 감경영역 : 6월 - 1년
- 가중영역 : 1년 - 2년6월

(2) 소수의견 : 김현아, 오기찬(2인)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3년 ↓, 2년 ↓	- 6월	4월 - 10월	8월 - 1년2월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가)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은 징역 4월을 포섭하여 형량범위의 폭은 6월로, 상한은
징역 1년2월로, 각 영역 사이의 중첩구간은 각 2월로 설정
- 기본영역 : 4월 - 10월
- 기본영역에 93.4% 포섭
- 감경영역 : - 6월
- 가중영역 : 8월 - 1년2월

(나)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은 징역 6월을 포섭하여 형량범위의 폭은 6월로, 상한은
1년6월로, 각 영역간 중첩구간은 각 2월로 설정
- 기본영역 : 6월 - 1년
- 기본영역에 66.5% 포섭
- 감경영역 : - 8월

○ 가중영역 : 10월 - 1년6월

(다) 제3유형 1억 원 이상

- 제1,2유형과의 차별, 고액 체불 사업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 규범적 평가를 고려하여 실무 사례보다 다소 높은 범위에서 형량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1억원 이상 유형은 1,2유형에 비하여 사건의 스펙트럼이 넓음을 고려, 각 구간의 형량범위와 중첩구간을 확대하여 탄력적인 양형 결정 가능하도록 설정
- 감경영역의 하한을 6월로 설정하여 양형기준 이탈을 최소화, 가중영역의 상한은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2년6월로 설정

○ 기본영역 : 10월 - 2년

- 기본영역에 26.2% 포섭

○ 감경영역 : 6월 - 1년4월

○ 가중영역 : 1년6월 - 2년6월

다. 소결 -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강제근로·근로자폭행	3년 ↓, 5년 ↓, 7년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임금 등 미지급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3년 ↓, 2년 ↓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라. 양형기준 설정범위

(1) 근로기준법 제109조(3년 이하)

(가) 제5장(여성 과 소년)

○ 제65조 (임산부 등 사용금지) ⇒ 제외(다수의견)⁵⁾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65조	임산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	3년↓
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	직업소개사업자가 18세 미만자를 근기법 제65조에 정한 사업에 소개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	3년↓
파견법 제42조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	5년↓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4호, 제91조 제4, 5, 6항	임신·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여성선원 사용, 임신 중인 여성을 선내 작업에 사용, 산후 1년 미만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 및 해로운 작업에 사용	3년↓

○ 다수의견 : 이재권, 황병현, 김세종, 범현, 김혜경(5인)

- 실제 처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 없음
- 18세 미만자를 유해 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대부분 청소년보호법 또는 아동법 등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보임

○ 소수의견 : 김현아, 오기찬(2인)

- 임산부, 18세 미만자에 대한 도덕상, 보건상 건강을 해치는 범죄로서 비록 사례가 많지 않으나, 최근 모성보호 중시, 육아에 대한 관심 증대, 여권 신장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규범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 제외(다수의견)⁶⁾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1항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년↓

5) 다수의견의 변화 : 제92차(포함) → 제93차(제외) → 제95차(제외)

6) 다수의견의 변화 : 제92차(제외) → 제93차(포함) → 제95차(제외)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3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6호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다수의견 : 이재권, 황병현, 김세중, 범현, 김혜경(5인)

-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 처벌사례가 거의 없거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기소·처벌되는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권고하는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적정한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규범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음

○ 소수의견 : 김현아, 오기찬(2인)

- 비록 사례가 많지 않으나, 최근 모성보호 중시, 육아에 대한 관심 증대, 여권 신장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처벌 사례가 적더라도 규범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I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96차 전체회의는 추후 개최하기로 함